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07.06.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06.12.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9.06.16.
- 다. 상정일자 : 제14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2009.07.0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곽 영 순 사회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공포(2007. 1. 2, 조례 제641호)됨에 따라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생활보장팀의 소속부서가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되었으나, 2007. 2. 15일 생활보장팀 소속부서가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수입금출납원 명칭 변경(안 제3조제2항)

- 생활보장팀 소속부서 변경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

2. 법령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 등을 반영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보장팀 소속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